

부산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나609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나6098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34230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백태균, 심유진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국 담당변호사 임영준

변론종결 2022. 11. 25.

판결선고 2022. 12. 9.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34230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인도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평당 5,0170,000원」을 「평당 50,170,000원」으로, 제4쪽 제6행의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원고가 구하는 ‘2022.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로, 제4쪽 제9행의 「1,783,180,940원」을 「1,743,180,940원」으로, 제4쪽 제15행의 「5. 10.」을 「2022. 5. 10.」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권현영, 판사 조윤정

별지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면서 2022. 12. 5. 이 사건 항소도 취하하였다.